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86 발의연월일: 2024. 8. 1.

발 의 자:서영교·조인철·박해철

주철현 • 허성무 • 복기왕

정진욱 • 황정아 • 박수현

박선원 • 박홍배 • 전용기

문금주 · 김문수 · 이훈기

이기헌 • 유준병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본인 사망 시까지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대상자의 사망으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 대부분이 고령인 배우자는 일정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생계 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그 배우자의 생활 안 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령에 따르면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보조비로 2 0만원을 지급할 수 있으나, 이는 현실적 장례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실 질적 지원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6개월분의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제보조비로 지급함으로써 그 공헌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8항 및 제9조제4항).

법률 제 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참전명예수당)"을 "(참전명예수당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액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지급방법,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4항 본문 중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보조비(葬祭補助費)를 지급하거나 그 밖의 보조를 할 수 있다"를 "참전명예수당의 6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에 받은 참전명예수당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장제보조비(葬祭補助費)로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

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참전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 ⑦ | 제6조 <u>(참전명예수당 등)</u> ① ~ ⑦ |
| (생 략) | (현행과 같음) |
| <u><신 설></u> | ⑧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참전 |
| |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
| |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에 해 |
| | 당하는 금액을 월액으로 지급 |
| | 한다. 이 경우 지급방법, 지급 |
| |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
|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第9條(묘지에의 안장) ① ~ ③ | 第9條(묘지에의 안장) ① ~ ③ |
| (생 략) | (현행과 같음) |
| ④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 4 |
| 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보 | 참전명예수당의 6개월분에 |
| 조비(葬祭補助費)를 지급하거나 | 해당하는 금액(사망한 날이 속 |
| 그 밖의 보조를 할 수 있다. 다 | 하는 달의 직전 달에 받은 참전 |
| 만, 국립묘지 또는 묘지에 안장 | 명예수당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 |
| 하거나 안치하는 경우에는 장 | 액을 말한다)을 장제보조비(葬 |
| 제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祭補助費)로 지급한다. <단서 |
| | <u>삭제></u> |
| ⑤・⑥ (생 략) | ⑤・⑥ (현행과 같음) |